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1 . . . (제 회)	

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영애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연월일	21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」 개정('21.3.23. 공포, '21.9.24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가 기준과 방법 근거 신설(안 제6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'22년 이후 지원센터 평가 예산 반영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지원센터의 평가)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환경의 적정성
2.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
3. 사업내용의 적정성
4.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(이하 “청소년상담원”이라 한다)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 신 설 >	<u>제6조2(지원센터의 평가)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환경의 적정성</u> <u>2.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</u> <u>3. 사업내용의 적정성</u> <u>4.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</u> <u>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(이하 “청소년상담원”이라 한다)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12